
해외조세동향보고

2010. 1.11 ~ 15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

프랑스 정부, 7월 1일 탄소세 도입

French Government to introduce Carbon Tax on July 1

(1. 7일자 Tax News.com, 1. 6일자 AFP NewsTaxNews.com, Brussels)

정부대변인 Luc Chatel에 따르면, Nicolas Sarkozy 프랑스 대통령은 최근 각료회의에서 7월 1일부터 탄소세¹⁾(Carbon Tax)를 도입·시행하기로 발표하였다.

이와같은 최근 발표는 Sarkozy 대통령이 자신은 첫 번째 난관에 굴복하지 않으며, 공해에 대한 세금부과를 목적으로 입안된 녹색과세(Green Levy)는 프랑스에서 주요한 이슈로 존재한다는 그의 신념을 피력한 연두교서에 이어 나온 것이다.

*당초 프랑스 정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석유,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에 대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1t당 17유로의 탄소세를 부과할 예정²⁾이었다. 그러나, 헌법위원회는 이 법안이 1000개 이상의 상위 배출기업에 대해 면세혜택을 주는 등 산업부문으로부터의 배출중 93%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고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정부의 수정·보완된 탄소세 법안은 당초 1월 20일까지 각료회의에서 검토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간적 제한, 업무의 복잡성과 곧 다가오는 프랑스 지방선거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이 기한은 지켜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Luc Chatel 프랑스 정부 대변인에 의하면, Jean-Louis Borloo 환경부 장관은 "탄소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각료회의에 의견(simple communication)을 제출할 예정이고, 관련 정당과의 대화를 개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프랑스 헌법위원회(Constitutional Council)는 정부의 당초 탄소세법안이 기본적인 평등의 원칙(principle of equality)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보아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당초 탄소세 도입법안을 비판하였다.

1) 탄소세는 연료의 탄소 함유량에 근거해 탄소 배출원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스웨덴이 지난 1991년 처음 도입한 이래 덴마크, 핀란드 등 일부 유럽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다.

2) 이런 탄소세가 도입되면 디젤 1ℓ당 0.045유로, 가솔린의 경우에는 1ℓ당 0.040유로의 세금이 추가될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위원회는 중공업 분야에 대해 새로운 탄소배출부과금의 면제혜택을 주는 정부의 결정을 맹렬히 비난하면서, 이러한 기업들이 2013년까지 탄소배출부과금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Christine Lagarde 프랑스 재무장관은 헌법위원회를 달래고 그 권고안을 고려하는 동시에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중공업 분야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국제 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정도 및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탄소세율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헌법위원회의 위헌결정을 모면한 다른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채, 신규 법안을 3월 지방선거 이후에 의회에 제출하려고 한다.

[자료조사정리: 임동현 주임연구원]

떠나느냐 마느냐 : Supertax 문제

To leave or not to leave: the supertax question

(2009-01-10, World News, Financial Times)

By Patrick Jenkins and Kate Burgess

런던에는 아직도 잡음이 많다. 하지만 이 잡음이 런던 금융가를 떠나려는 은행장들의 진심 어린 불만의 소리인지, 아니면 £25,000 이상의 보너스에 적용되는 50% supertax에 짜증이 난 직원들의 징징대는 소리인지는 구분하기 어렵다.

런던의 선두 투자 은행들을 대상으로 한 Financial Times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러한 녀두리는 멈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supertax를 직원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자신들이 떠안는 쪽으로 마음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원들이 불평할만한 것은 상대적으로 적어야 할 것이다. 특히나 보상 차원에서 대폭 인상한 기본급여에서 많은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런던이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은행장들은 경고한다. FT 설문조사에서 “미래 사업 확장을 UK 또는 런던이 아닌 곳에서 해볼 의사가 있다”는 항목에 “아니다”라고 답한 은행은 없었다. 모든 은행이 특정한 몇몇 개의 활동은 UK/런던이 아닌 곳에서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했다.

이것은 실제로 supertax를 피하는 것과는 연관이 없다. Supertax의 징세는 2009년 보너스에 적용되고 4월에 만기되며, 은행들이 보너스를 나중에 지급하며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탈세 방지 대책도 마련되어 있다. 대신 비평가들은 이것이 런던의 기반을 꾸준히 갉아 먹히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한다.

유럽의 한 투자은행장은 직원의 1/4 정도는 쉽게 재배치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6개월 이내에 5,000명에서 10,000명의 은행원들을 프랑크푸르트나 취리히와 같은 다른 유럽 중심부로 이동시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미 은행장들과 인사 부서들은 빗발치는 문의로 인해 동요를 겪고 있다. 특히 영국인이 아닌 사람들이 다른 나라나 본국으로 돌아가길 희망하고 있다. 취리히가 그중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데, 쾌적하고 인맥 네트워크도 좋으며 세율도 낮고 이미 기반이 잘 다져졌다는 점에서 선호된다.

은행가들은 미국 은행들은 런던 밖으로 철수할 가능성이 적다고 말한다. 미국 은행

장들이 영어 사용 도시가 아닌 곳을 유럽 금융의 허브로 두려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프랑스 은행도 마찬가지다. 사르코지 대통령이 비슷한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언질했기 때문에 파리로 인원을 이동시키기 꺼림직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독일 은행가들은 프랑크푸르트에 대해 시큰둥하기로 유명하다.

이러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5월 예정의 선거 이후 취임하게 될 정권으로 보수당을 선출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이러한 요소들은 런던의 금융권의 힘이 약화되는 것에 어느 정도 한계를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것이 supertax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은행의 추정치가 맞다면, 런던은 재무부에 50억 파운드(55억 유로, 79억 달러)의 supertax를 납세할 것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달 예상한 5.5억 파운드보다 훨씬 많으며 이번 주 재무부에서 다시 예상한 10억 파운드보다도 훨씬 앞서간다.

은행가들이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이익에서 차감되며 잠재적인 이익 배당금을 감소시켜 주주들의 분노를 살 것이다. “도대체 왜 우리가 이것을 다 짊어져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 투자자가 말했다.

이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일부 투자자들은 은행들이 라이벌 은행들에게 직원들을 잃지 않기 위해 보너스를 급감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영국보험인협회의 Peter Montagnon은 모든 과정이 필요했던 것보다 과도하게 복잡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는 영국 정부가 다른 국제 센터들과 협력했다면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충고한다.

FT는 12개의 은행을 조사했다.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Barclays Capital, Citigroup, Credit Suisse, Deutsche Bank, Goldman Sachs, HSBC, JP Morgan, Morgan Stanley, Nomura, RBS 그리고 UBS이다. Goldman과 JP Morgan은 응답하지 않았다.

주주 측, 투자자들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
Investors must not foot bill, warn shareholders

영국의 가장 유력한 주주들은 만일 투자자 측이 비용을 부담할 경우 회사 측 이사회가 큰 금액의 보너스를 지불하고 임원들을 세금인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대해 경고조치를 취하고 있다.

영국보험인협회는 이사회가 회사 비용에 부가될 지불 계획을 승인하고 주주들의 수

익을 축내는 것에 대해 경고했다.

ABI가 영국 상위 350개 기업들의 급여위원회 회장들에게 보낸 편지는 25000 또는 그 이상에 달하는 은행 직원 보너스에 50%의 supertax를 부과하고 수입이 150,000 이상이면 누구나 소득세율을 50%까지 인상하겠다는 정부의 공식 발표 뒤에 곧바로 이어 졌다.

투자자들은 은행 측에서 지불금을 줄이거나 세금을 직원들에게 떠맡기는 대신에 보너스에 부과되는 supertax를 배당금과 소득을 들여가며 처리하게 될 것을 염려 하고 있다.

영국의 한 상위 투자자는 “기업들이 이사 측의 납세 입장을 개선 시키기 위해 더욱 큰 대가를 초래하도록 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고 말했다.

직원들에게 조세 효율적 이도록 계획된 구조는 기업의 세금 또는 임금고지서 금액을 올리지 않아야 한다며 ABI는 편지를 통해 이사회들에게 주주들에 대해 갖는 책임을 상기 시키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를 권했다.

[자료조사·정리: 이혜명 행정요원]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대한 조세 취급

Jeffery Owens, Director of OECD center for Tax Policy and Administration
(2009.12, oecd정책연구보고서)

기후변화는 글로벌 리더십이 필요로 하는 도전과제이다.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목표는 의욕적으로 설정해야할 뿐만 아니라,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정책수단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경제적비용을 줄일수록 좀더 괜찮은 정책이 될 것이다.

기후변화협약이라는 맥락에서, 거래가능한 배출권(tradable emission permits)이 매우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2005년에 만들어진 'EU 배출거래 시스템(European Emission Trading System, Eu ETS)'은 이미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절반수준을 커버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제도를 많은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고려중인바, 선진국들의 배출총량을 정해놓고 이를 배분하는 'cap and trade' 방식이나 다른 거래가능한 배출권 제도들에서 커버되는 배출량의 비중이 향후 몇 년간 3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배출거래권에 대한 직·간접 측면에서의 조세 문제를 다루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잠재적인 조세 장애(obstacle)를 처리하는 못하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거나 이산화탄소 시장의 국제통합을 지연시킬 것이다.

배출량 목표 달성을 위한 "cap- and - trade" 제도의 활용

"cap- and - trade" 제도의 장점은 배출량의 최고한도를 설정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설정된 최고한도내에서 경매 등을 통해 배출권을 배분한다. 민간기업은 서로간에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으며, 시장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가격은 기업이나 소비자가 제품을 생산·소비 등의 의사 결정과정에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것이다. 배출권을 보유한 기업은 자신에게 허용된 배출량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배출거래권을 사용하거나, 배출량을 줄이고 남은 배출권을 판매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

온실가스 1톤당 배출량을 줄이는데 드는 비용이 1톤당 배출권 시장가격에 비해 낮다면, 온실가스 감축이 더 가치가 있다. 그래서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 축소를 위한 노력할 것이다. 이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들이 온실가스 배출 축소를 위한 한계비용과 배출권 시장가격이 일치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체 온실가스 감축은 최소비용으로 달성가능하다. 거래가능한 배출권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좋을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 큰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배출량 수준을 좀더 확실하게 추정할 수 있는 “cap- and - trade” 제도들을 선택하는 이유중의 하나이다. “cap-and - trade”방식의 제도는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명확한 시장가격을 설정할 수 있으며, 향후에 화석연료 가격에 어떤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이산화탄소 감축목표를 달성 할 수 있다.

조세 이슈

지금까지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많은 분석은 법인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암묵적으로 이러한 조세가 없거나, 세금효과가 없다고 가정하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조세체계를 고려하지 않은 배출권 거래제는 배출권 취득 비용, 배출권 판매과정, 이러한 비즈니스 의사결정과정에 왜곡을 유발할 수 있다.

현실적인 가정은 배출권 거래제가 현행 조세체계내에서 작동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문제는 주어진 환경목표와 조세정책 디자인에 대한 고려를 얼마나 잘하는 지에 관한 것이다.

조세행정 및 조세의무이행 확보 프로그램을 배출권 거래시장의 운영과 적절히 조화가(piggy-back) 있어야 한다. 오용 또는 남용 등의 위험요인이 있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제의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수익창출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민간기업의 입장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투자는 자본집약적(capital-intensive)이고, 회수기간은 길어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조세체계를 원

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투자는 개발도상국에서도 있을 수 있는데, 투자의사결과정에서 조세가 장애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다른 투자와 비교하여 국내상쇄(offset) 프로젝트에 대한 조세대응과 관련하여 유사한 고려가 필요하다.

배출권은 처음에 어떻게 배분되는지는(무료로 또는 경매를 통해) 정부수입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컨대, ETS체계하에서 발행된 배출권은 연간 20억만톤의 이산화탄소 배출권이다.

톤당 13~15유로의 가격에서, 배출권을 경매를 통해 판매할 때 얻을 수 있는 수입은 250억 유로 또는 GDP의 0.2%수준에 해당된다. 배출권의 거래에 대한 세금부과 또는 세금감면의 양은 상당한 수준일 수 있다.(다만, 이러한 자금흐름이 세금부과/감면의 양 측면의 효과가 상쇄되어 재정수입에 제한된 범위내에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배출거래권에 대해 조세측면에서의 접근하는 것은 환경목표 달성 및 조세체계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중요하다.

정책제언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의 통합되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대한 조세 방안에 대한 국제적 대화가 더욱 중요한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OECD 재정위원회는 동 이슈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하였고, 배출권의 조세 방안에 대한 Best Ptactice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동 이슈는 관련되는 분야의 학제간 연구가 필요한 분야임을 고려할 때, OECD의 조세 및 환경 전문가들의 합동회의는 국제조세협약 및 기후변화의 경제학 등의 분야에서의 다른 작업반과의 공동작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조세 및 환경 전문가,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9월 16~17일 개최된 첫 번째 회의에서 중요 이슈들이 도출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문가들은 조세왜곡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한 이슈라고 결론을 내렸다. 2011년초에 OECD 회원국 및 관심있는 국가에 보고하는 것을 것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추진해 가고 있다. OECD는 실행가능한(viable) 국제적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심있는 모든 나라와 협의하고자 한다.

[자료조사정리: 부분부장 이종훈]

오바마 행정부, 은행을 대상으로 새로운 세금 과세 준비 중

Obama prepares fresh tax on banks

(2009-01-12, Financial Times)

By Tom Braithwaite in Washington

오바마 행정부는 은행에 대한 징벌적인 조치를 원하는 미국 의회 민주당원들의 늘어가는 압박 속에서 2월에 발표될 예산의 일부가 될 새로운 세금을 금융권에 부과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세금 부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것은 금융권이 수십억 달러의 새로운 보너스를 발표하려는 시점에서 은행에 대한 분노를 나타내는 것과 예산 적자 삭감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예전에 영국 수상인 고든 브라운의 계획이었던 금융거래세 도입에 찬물을 끼얹은 바 있다.

Bonus tax 또한 행정부에게 그다지 인기를 끌지 못했으나, 정부 관리들은 행정부가 11월 중간선거에서 국회의원직을 잃을까 걱정하는 진보 민주당원들의 요구에 대한 응답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자세한 내용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관리들은 이미 미국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과세와 유사한 세금 부과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금융서비스산업 분야에서 이번 주는 내일 Financial Crisis Inquiry Commission에서 은행 간부들이 첫 번째로 공식 청문회를 갖기 때문에 중대한 주간이 되었다.

우연의 일치로 공식 청문회의 주인공은 새 보너스에 대해 발표하는 Goldman Sachs, JPMorgan Chase, Morgan Stanley, 그리고 Bank of America의 간부들이 될 것이다.

하원에서 승인했지만 상원에서 무효가 된 보너스에 부과하는 90%의 과세를 포함하여, 금융업은 지난 12개월 동안 새로운 세금 제도의 위협을 피해 잘 버텼다.

[자료조사·정리: 이해명 행정요원]

오바마 대통령, 친환경산업에 23억불의 세액공제를 부여할 것

Obama awards \$2.3billion clean energy tax credits

(2010.1.10, Reuters)

미국 대통령 바락 오바마는 지난 금요일에 친환경에너지(clean energy) 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3억불의 세액공제(tax credit)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의 발표된 통계에서도, 미국의 실업률이 두자리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오바마는 (지난해 2월에 발표된 7,870억불의 경기부양책 하나로 이미 발표된) 금번 세액공제 방안이 17,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50억불에 해당되는 추가적인 민간자본과 매칭될 것이라고 얘기했다.

오바마는 “경쟁력있는 친환경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미래의 일자리, 높은 보수의 일자리, 아웃소싱이 할 수 없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친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세액공제 방안은 중산층 가정에게 유익하며, 국가안보에 유익하며, 지구를 위해 유익하다”라고 얘기했다.

높은 실업률은 오바마 정부의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과제중에 하나이며,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월간 급여통계(monthly payroll report)에 의하면, 노동시장 여건이 아직까지도 암울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미국의 실업률은 12월의 10퍼센트에서 변동이 없으며, 이 기간에 85,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오늘 아침에 발표된 노동부의 취업자수 통계를 보면, 경기회복이 아직 정상궤도에 도달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라고 오바마는 얘기했다.

기후변화는 건강보험 및 금융산업 규제개혁과 같이 오바마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이다.

이러한 핵심 정책과제들은 의회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데, 오바마가 속한 민주당은 실업률이 하락하지 않을 경우 올해 11월의 의원선거에서 패배(setback)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액공제 혜택은 미국 전역에 걸쳐 태양력, 풍력, 그 밖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 등 183개 프로젝트에 주어졌다.

세액공제에 따른 가장 직접적인 결과는 수십만명의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이라고 오바마는 말했다.

백악관 대변인은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70년만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제가 더욱 악화되는 것을 막았으며, 많은 전문가들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오바마는 지난달 일자리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은행회장들과 만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미국 하원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1,550억불의 추가적인 재정지원 사업을(package) 승인하였다, 다만 상원은 아직 동 재정지원사업을 입법(법제화) 작업을 하지 않았으며,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헬스케어 개혁방안에 대해서도 첫 번째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일자리 원상회복을 위해 모든 수단들을 강구할 것이다”라고 대변인은 얘기했다.

친환경 세액공제는 Itron, PPG Industries, TPI Composites 등의 회사에 혜택이 주어질 것이다.

[자료조사정리: 부분부장 이종훈]

바하마, OECD 조세투명성 목표 달성을 위한 정상궤도 진입

Bahamas on track for OECD Tax Transparency Goal

(1. 5일자 InvestorsOffshore.com)

바하마 정부는 현재 23개국과 과세정보교환협정(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s: TIEAs)을 마무리짓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G20이 정한 시한인 2010년 3월 이전에 협정체결 최소기준 12개를 초과한 지역으로 인정받기를 기대한다고 발표하였다.

현재, 바하마는 미국, 모나코, 산마리노, 영국, 뉴질랜드, 네덜란드, 중국, 아르헨티나, 벨기에 및 프랑스 등 10개국과 과세정보교환협정에 서명하였다.

아직 비준 전이지만 향후 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을 완료한 국가는 독일, 캐나다, 스페인, 멕시코, 호주, 남아공, 한국, 그리고 7개 북유럽 국가(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및 파로 제도) 등이다.

더 나아가, 바하마 정부는 국제금융서비스 규제에 관한 논의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바하마는 개편된 OECD Global Forum의 회원으로 구성된 OECD 상호검토그룹의 일원으로 선출되었다.

이 상호검토그룹은 OECD 글로벌포럼에 참여하는 90여개 회원국의 과세정보교환기준 시행의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상호검토 프로그램의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본 그룹은 현재 글로벌 포럼 회원이 아닌 국제금융센터의 진행상황도 모니터링한다.

바하마 정부는 발표문에서 국가 경제에 대한 금융서비스부문의 가치를 고려하여 이를 보호하려는 바램을 강조하고, 변화하는 기준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바하마가 잘 규제된 지역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확신시키고 싶다고 밝혔다.

[자료조사정리: 임동현 주임연구원]

프랑스, 360만 유로를 은행 보너스 세금에서 걷다

Paris looks for €360m from bank bonus tax

(2009-01-13, Financial Times)

by Seherazade Daneshkhu and Ben Hall in Paris

프랑스 재무부 장관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프랑스 정부가 프랑스에 위치한 은행들의 보너스에 부과하는 횡재세(windfall levy)에서 360만 유로를 얻을 것을 의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액수는 예상했던 것보다 다소 높으며, (런던에 있는 은행들이 그렇게 한다면) 은행들이 세금을 흡수하면서 보너스를 전액 지급할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했다. 세금은 은행 임원들보다는 은행들에게 부과될 것이다.

라가르드 장관의 예상은 영국 재무부가 예상한 보너스 세금의 총수입인 550만 파운드(890만 달러, 612만 유로)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이것에 따르면 파리는 영국에 비해 금융권이 몇 배나 작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부가 예측한 총수입의 절반 이상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가르드 장관은 프랑스 세금이 2,500개 은행 간부들의 보너스에 적용될 것이라고 르 피가로 신문에 전했다. 프랑스 은행들은 보너스에 대한 결정을 2월이나 3월에 할 것이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려면 시간이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미국 은행들의 조치로 인해 어느 정도의 격분이 표출되는지 먼저 보고 결정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경쟁의 문제도 포함됩니다. 사람들이 은행을 그만두고 나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한 은행 간부가 말했다.

다른 은행 간부는 이렇게 전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주주 또는 거래자들은 불만족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라가르드 장관은 은행의 추정에 의하면 작년의 총 보너스 금액은 금융 위기가 닥치기 직전 년도인 2007년 총 보너스 금액보다 16%밖에 낮지 않다고 전한다. Recruitment consultant 회사인 Russel-Reynold의 프랑스 컨설턴트인 Paul Jaeger은 “작년은 프랑스 은행들에게 2008년보다 더 사정이 나은 해였기 때문에 보너스는 같거나 높을 것이다. 주요한 변화는 보너스의 보다 높은 비율의 지불이 새로운 G20

규칙에 따라서 연기될 것이라는 점이다.” 라고 전했다.

세금은 2009년에 지급된 보너스, 지체상여, 현금뿐만 아니라 주식을 통한 지불에 적용된다. 세금은 27,500유로 이상의 보너스에 부과될 것이다.

은행들 사이에서는 사르코지 대통령이 미국 은행들에게 적용될 국제 협약을 얻어내는 대신에 영국 수상 고든 브라운의 방식을 따라 은행에 super tax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가득하다.

그러나 파리는 은행 보증금을 7만 유로에서 10만 유로로 올려야 한다는 EU 규칙에 따라 예정된 총수입에서 270만 유로를 예금보호법(bank deposit guarantee scheme)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자료조사·정리: 이혜명 행정요원]

네덜란드, 연말 세제법안 도입

Netherlands introduces end of year tax measures
(1월 5일자, Tax-News.com, Brussels)

네덜란드 정부는 2010년에 시행될 다수의 세제법안을 발표하였다. 금번 세제개편은 상속 및 증여에 대한 보다 완화된 세제안을 비롯해 차량에 대한 세제 개편 및 경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받는 제품의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상속세에 대한 개편안은 2010년 1월 1일부터 상속·증여에 대한 세율이 경감되어 시행될 것이며,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면세점도 상향될 것이다.

차량 구입 시 부과되는 관련 조세제도는 배기가스배출 기준으로 변경될 것이며, 새로운 세법체제하에서는 기본적으로 보다 친환경 차량이 좀 더 낮은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전기와 같은 친환경적 대체 에너지를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면세 조치도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네덜란드 정부는 주택개량, 단열재, 디지털교육정보 및 전동자전거 등에 대해서는 6%의 낮은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금번 세제개편안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소규모 투자공제를 증액시켰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구·개발(R&D) 및 혁신을 좀더 지원하기 위해, 현존 특허지원법안(patents box schemes)을 대신할 혁신지원법안(innovation box schemes)을 도입하기로 공언하였다. 그 결과, R&D를 통한 소득은 5%의 세율로 과세되며, 이에 대한 상한선 또한 폐지될 것이다.

[자료조사정리: 임동현 주임연구원]